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군사보호구역 등에서 군사기밀 및 군사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해당 구역에 출입하는 개인이 휴대한 군사 목적 외 휴대폰에 ‘국방모바일보안 앱’ 등 보안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하여 미이행한 개인에 대해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군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한 용어를 수정하여, 시행령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군사기밀 보호법」과 내용이 동일한 제2조 전체를 삭제하고, 이에 따라, 제1조 내에 「군사기밀 보호법」을 이하 ‘법’으로 약칭토록 명시(안 제1조, 제2조)

나. 군사보호구역 등에서 군사기밀 및 군사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구역에 출입하는 개인이 휴대한 군사 목적 외 휴대폰에 보안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미이행한 개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보호조치에 “보안소프트웨어의 설치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안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 군사 목적 외 개인 휴대 전자통신장비의 반입 제한” 신설(안 제5조 제4항)

다. 군에서 실제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한 용어를 수정(안 제7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사기밀 보호법」”을 “「군사기밀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안소프트웨어의 설치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안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 군사 목적 외 개인 휴대 전자통신장비의 반입 제한

제7조제1항 및 제3항 중 “보안정책회의”를 각각 “보안심사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 <u>군사기밀 보호법</u>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 <u>군사기밀 보호법</u>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군사기밀 보호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군사기밀의 공개”란 군사기밀 내용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비밀 취급이 인가되지 아니한 일반인에게 성명(聲明)·언론·집회 등을 통하여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1. “군사기밀의 공개”란 군사기밀 내용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비밀 취급이 인가되지 아니한 일반인에게 성명(聲明)·언론·집회 등을 통하여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2.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이란 「군사기밀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 그 요청자 등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군사기밀을 인도 또는 열람하게 하거나 군사기밀의 내용을 말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2.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이란 「군사기밀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 그 요청자 등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군사기밀을 인도 또는 열람하게 하거나 군사기밀의 내용을 말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④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설정된 군사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공개) ①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7조에 따라 군사기밀을 공개할 때에는 보안정책회의를 거쳐 공개하되, 중요 군사기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안정책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소관 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

④ _____

4. 보안소프트웨어의 설치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안조
치를 적용하지 아니한, 군사
목적 외 개인 휴대 전자통신
장비의 반입 제한

제7조(공개) ① -----

보안심사위원회-----

-----.

③ ----- 보안심사위원
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2341